

울산지방법원 2024. 3. 19 선고 2023가단1189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 고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인

담당변호사 정유리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선인

담당변호사 김승현

변 론 종 결 2024. 1. 16.

판 결 선 고 2024. 3. 19.

주 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소장 송달 다음날을 편의상 소장 최종 송달 다음날로 변경하여 인정하는 외에는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치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22. 3. 18. 주식회사 D(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울산 울주군 E 지상 양조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2,970,000,000원, 공사기간 2022. 8. 28.까지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22. 3. 31.부터 2022. 9. 1.까지 사이에 소외회사에게 공사대금 1,755,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소외회사는 2022. 9. 21. 원고에게 ‘원고가 외주업체 F(주)에 직접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2022. 9. 23.까지 변제하고, 이 사건 공사 현장 공사대금으로 받은 전체 기성금액 중 미자료 확인 부분 금액 300,000,000원을 상기공사의 공사기간 중 분할 변제함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지불확인서(이하 ‘이 사건 지불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때 피고들은 소외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보증하였다.

라. 원고는 2022. 10. 19. 및 2022. 10. 26. 소외회사에게 ‘2022. 8. 2.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였으나, 2022. 8. 9. 이후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공사포기각서를 요청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이에 소외회사는 2022. 11. 3.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타절을 요청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는 소외회사를 상대로 울산지방법원 2022가합13960호로 초과 지급한 공사대금 등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 중 소외회사가 같은 법원 2022가합13977호로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3. 10. 19. ‘소외회사가 공사한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은 1,209,516,000원이고,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1,766,500,000원이라는 이유로 소외회사는 원고에게 기지급된 공사대금 중 545,984,000원 및 원고가 대위지급한 하도급대금 210,559,943원 합계 756,543,943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23. 11. 10. 확정되었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회사의 보증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한 채무 3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원고와 소외회사에게 상행위가 되는 공사계약에 기하여 작성되었으므로 상법 제5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보증채무는 연대보증채무라 할 것이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이 사건 지불확인서는 추후 미자료 기성금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산정이 되고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면 기성금으로 갚아 나가겠다는 취지로서 이 사건 공사가 재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공사가 결국 재개되지 못하고 타절되었으므로 이 사건 지불확인서는 조건의 불성취로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불확인서가 작성된 경위, 문구 및 작성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지불확인서에 기재된 ‘상기공사의 공사기간 중 분할 변제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은 300,000,000원의 변제시기를 정하기 위한 것일 뿐 공사가 재개되어 기성금이 발생하는 것을 전제로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는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소장을 최종 송달받은

다음날인 2023.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판사 오규희